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6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김기덕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 경,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박승진, 송재혁, 아이수루,
오금란, 왕정순, 유정희,
이상훈,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임종국, 홍국표, 황철규
의원(21명)

1. 제안이유

- 각종 체육사업 관련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열악한 대우를 받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원책이 요구됨
- 이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및 수준 높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인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특히, 최근 건강 및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을 통해 체육시설 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함 (안 제2조제1호)
- 나.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다.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포츠클럽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

제7조의3(생활체육지도자 일·가정 양립 지원) ① 시장은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권

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고 회원의 정기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
<신 설>	제7조의3(생활체육지도자 일·가정 양립 지원) ① 시장은 체육회가 소

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7조의2(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사업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시 관련부서(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의결과 ¹⁾ 시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없어 별도의 비용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제7조의3(생활체육지도자 일·가정 양립 지원)	×	
3	제9조의2(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	스포츠클럽 대상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의결과 스포츠클럽(Q)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현재로선 비용 추정이 곤란함(자체 추계 또한 정보가 적어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동 개정안 제9조의2(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스포츠클럽 대상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액을 추정하려면 지역 내 스포츠클럽의 시립 체육시설 이용빈도,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 등을 파악할 만한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 관련부서(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의결과 지역 내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보가 적어 현재로선 비용추계가 어려움

[참고] 각 체육시설 사용료 연간 감면액 표준산식 예시

$$= [(지역 내 스포츠클럽^2) \times \text{연평균 이용 이용횟수}] \times \text{사용료}] \times \text{감면율(Ex. 80~100\%)}^{3)}$$

- 1) 서울시 관련부서(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의결과 현재 시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없어 시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만일 향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경우 비용이 소요될 여지가 있으나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 현재로선 이를 반영할 만한 합리적 요소가 없어 고려사항에서 제외함
- 2)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포털에 따르면 서울 내 지정스포츠클럽은 총 6개로 확인됨
※ 자료 : <https://sportsclub.sports.or.kr/home/search/FPOD0095C?searchType=gijeung>, (2025. 2. 3. 확인)
- 3) 등록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스포츠클럽법」 제15조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가능함
⇒ 감면의 범위는 등록스포츠클럽은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 지정스포츠클럽은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자료 :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포털)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